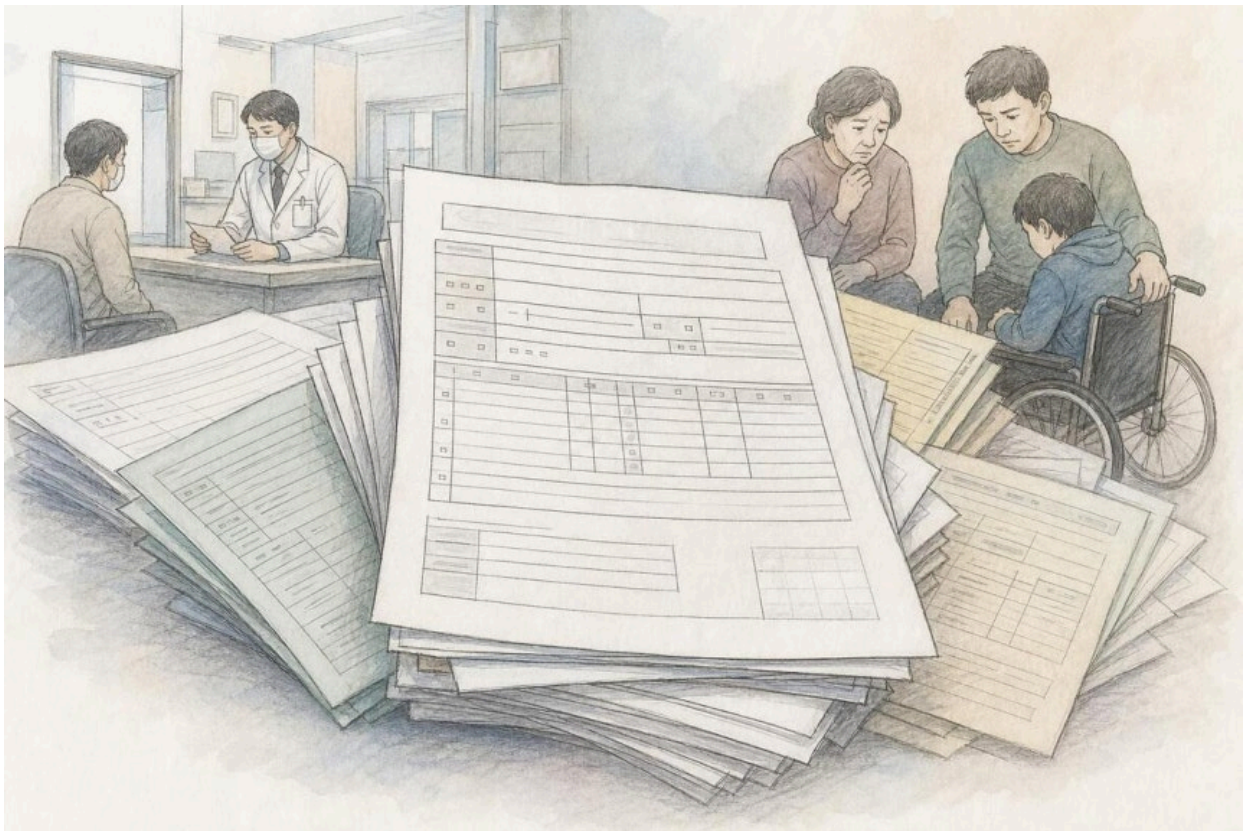


국민일보

[단독] 유족·장애인 필수서류 발급비용도 병원마다 최대 100배 차이

입력 2026.10.07. 오후 12:14 수정 2026.10.07. 오후 12:29

소병훈 “상한제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해야”



AI로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유족 등에게 필요한 병원 서류 발급 비용이 병원마다 최대 100배까지 차이를 보이는 등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0년 전부터 증명서 발급 비용의 상한선을 두고 있지만, 의료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으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판정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하려면 일부 의원에서는 최대 20만원을 내야 한다.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평균 발급 비용인 1만116원의 약 2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수급자는 해당 진

단서를 1년 단위로 새로 제출해야 한다.

장애등록에 필요한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도 발급 비용이 최대 30만원에 달했다. 평균 발급 비용인 1만5303원의 19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사망신고나 장례, 재산정리 등에 필요한 사망진단서도 일부 의원에서는 30만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증명서 발급비를 가장 적게 받는 의원이 3000원이었는데, 최대 100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진단서 양식은 의료법에 따라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특별한 차이가 없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주로 발급하는 증명서 30개 항목의 상한금액을 2017년부터 정하고 있다.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와 사망진단서는 1만원,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는 1만5000원을 상한선으로 두고 있다. 이 상한금액에는 진찰료나 각종 검사료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가 상한금액을 정한 뒤에도 증명서 최대 발급 비용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2022년 15만원에서 2023·2024년 10만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와 올해 다시 20만원으로 올랐다. 사망진단서는 2022년 10만원에서 2024년 28만원, 지난해와 올해 30만원으로 올랐다.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는 2022년 2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25만원, 올해는 30만원까지 뛰었다.

병원 서류 발급 비용이 동네 의원마다 천차만별인 까닭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이다. 의료법상 병원이 공지한 가격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사전 공지한 금액이 정부 고시에서 정한 상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법적 제재는 받지 않는다.

소 의원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상한제가 되지 않도록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Copyright © 국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주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77256>
